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6 높은 다소 매우 매우 보통 낮은 높은 낮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5년 9월 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10월 2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5년 9월 28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O868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O88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O88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O8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O8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O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O9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O9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O9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O9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O9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O9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O91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O9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O9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O918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NH-Amundi 중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 1 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5.09.01)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EO868)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3 5 6 매우 다소 매우 높은 보통 낮은 높은 높은 낮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mark>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mark>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시장 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u>및</u>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은행채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의 성장 정책 지원 등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핵심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며 기업가치 개선이 기대되는 턴어라운드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7%이내	1.000	0.600	0.76	1.000	172	277	386	618	1,28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350	0.950	1.12	1.350	138	282	430	744	1,632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35%이내	0.700	0.300	0.60	0.700	106	181	258	423	90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875	0.475	0.73	0.875	90	183	280	487	1,082

투자비용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mark>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mark>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 5)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며, 매일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사회공헌기금은 신성장·신기술·농업테크 관련 산업체 및 대학교에 대한 지원, 공익재단 및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농업·농촌 공공활동 및 이에 준하는 기타 사업에의 지원,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는 시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설정일 이후 참조지수 (%) 수익률 변동성(%)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연평균 수익률) (주 1) 참조지수: KOSPI 30% + KIS국고채(02-03Y) 65% + Call rate 5%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징상 비교지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후적 운용평가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참조지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ип	1114	TLOI	운용현황	(개,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				운용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	097п	운용	용역	운용	용사	경력년수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홍승관	1991	책임 (과장) 채권운용	11	10,800	-	-	11.35	8.51	8년 2개월
정현욱	1977	책임 (팀장) 주식운용	17	2,154	11.50	9.46	11.35	8.51	17년 2개월
최치현	1988	부책임 (차장) 주식운용	8	2,438	-	-	11.35	8.51	4년

운용전문인력 (`25.09.01 기준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솔루션본부, 주식운용 1 본부, 주식운용 2 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스템(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주식 투자전략 중 하나인 '역발상 투자 전략'에 따라 편입된 종목이 예상치 못한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라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2 영 •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_{함께 바버}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15 시 30 분 경과 후: 4 영업일 기준가 5 영업일 지급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	수익자	세 3 하는 종합 매년 발생 손익	대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독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라게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1.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1. 항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1. 일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과세 금융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u>o</u>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7	계속 모집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 조좌						
효력발생일	2025 년 10 월	월 24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종류(0	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수수 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년 10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년 10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통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년 10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통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년 10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후취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한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 수시공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1
3. 모집예정금액	11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2
5. 인수에 관한 사항	12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3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3
4. 집합투자업자	13
5. 운용전문인력	14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8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8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23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6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6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0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5
1. 재무정보	4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5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5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6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48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8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9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0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0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2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2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5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6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0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1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62
용 어 풀 이	63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O868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O88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O88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O8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O8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O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O9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O9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O9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O9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O9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O9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O91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O9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O9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O91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혼합형)
-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없음
-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디지기가	2025년 9월 28일	! 모집 개시 이후 특 ^년	별한 사유가 없는	- 한 영업일에 한혀	하여 모집,
모집기간	판매됩니다.				
	판매회사의	본ㆍ지점(모집장소(게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장소	금융투자협회전자	공시시스템(dis.kofia.d	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	-amundi.com)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디	t.)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	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O868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O88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O88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O8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O8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O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O9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O9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O9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O9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O9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O9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O91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O9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O9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O91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5.10.14	최초 설정
2025.10.24	투자대상자산 및 취득한도 조정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Tel: 02-368-3600, www.nh-amundi.com)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5.09.01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과보수가 약정	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과장 1991 (채권운용) 8년 2개월		8년 2개월	-	-		
홍승관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4.02. ~ 현	재 NH-Amun	di자산운용 채권를	솔루션본부			
	- 2017.07. ~ 202	24.01. 롯데손해보	면험 일반투자팀 ^및	특별계정1센터			
				성과보수가 약정	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생년	병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1977	팀장 (주식운용)	17년 2개월	1	132		
정현욱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15.10~현재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						
	-2008.07~2015.	10 BNK자산운용	용(구 GS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			
부책임운용전문	·인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1988	차장 (주식운용)	4년	-	-		
최치현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5.01~ 현지	NH-Amund	i자산운용 주식운	용2본부			
	- 2021.09~2024	.12 NH-Amund	i자산운용 주식리	서치팀			
	- 2016.07~2018	.06 메리츠종합	금융증권 기업분석	넉팀			
	- 2015.04~2016.06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솔루션본부, 주식운용1본부, 주식운용2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5.09.01 기준)

ИN	운용	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성명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역(%) 운용사(%)			
	기구 수(개)	(억원좌)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홍승관	11	10,800	-	-	11.35	8.51	
정현욱	17	2,154	11.50	9.46	11.35	8.51	
최치현	8	2,438	-	-	11.35	8.51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HHHO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책임운용역	책임운용역
-	-	-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0+-6-1-0 (Ae)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스스크미지그 오라이 (~)	온라인 (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
	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최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입시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최초 가입시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 법
스스크미지그 ㅇㅍ긔이 램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1121012================================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연금저축))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지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3단계 구분(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펀드특성)에 따른 종류형 펀드의 대표적인 차이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음과 같습니다.
종류(CI	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1년 10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1년 10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1 년 10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1 년 10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권유저비 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 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 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	대성	당 및 비	율 세부	설명	
1	채권	50% 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제외한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A2-이상이어야 한다)			
2	주식	30% 이하 (주식에의 투자비율에 ⑤의 집합투자증권 중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합산합니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등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증권의 대여 ^{주3)}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증권의 차입 ^{주4)}	2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차입			
<u>*</u> (②의 주식과 ⑤의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의	<u>합은 30% 이하로 합니다.</u>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이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_ = ' - " '		=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u>⑥ 내지 ⑧</u>, 신탁계약서 <u>제17조제2호</u> <u>내지 제4호</u>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 제17조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증권의 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4)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제3황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가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기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재 중 후순위사재권, 한국주택금용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자권당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중권(항국주택금용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용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백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발한 자료의 자급을 보증한 주백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발한 자금의 건강 보충한 주백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발한다)도 변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발한다)로 변화한 자급의 보증한 주백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당한다)로 보증한 주백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당한다)로 보다는 주택자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당한다)로 보증한 주백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백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당한대 전략적 전략적 당한대 전략적 당한대 전략적 전략적 전략적 당한대 전략적 전략적 당한대 전략적 전략적 전략적 당한대 전략적 전략적 당한대 전략적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예외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 – .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설정일로 부터

		1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에의 투자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동일법인등이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발행한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지분증권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발생하여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지급이 곤란한때 ② 신탁계약서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지급이 곤란한때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의 대여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및 담보제공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은행채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의 성장 정책 지원 등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핵심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며 기업가치 개선이 기대되는 턴어라운드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식 투자전략]

- 성장 산업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정부의 핵심 산업 육성 정책 등의 수혜를 입어 장기적인 성장이 가속화될 유망 산업(인공지능 인프라, 원자력, 방위산업, 조선, 신재생에너지,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을 선별하고 각 분야의 핵심 기업과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어가는 환경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제고가 예상되는 종목 등으로 투자 유니버스 구성ㄹ

성장주도산업분류기준예시

성장 산업 유형 분류	산업 분류 예시	정부주도정책	기업 대응 전략
구조적 성장 : 시장 규모의 확대	AI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Al 고속도로	국가대표 LLM 개발, AI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경쟁력: 글로벌기술력 확보	방위 산업, 원자력, IT, AI	R&D 투자세액 감면, 정책펀드 조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 : 신규 제품 개발 및 현지 거점 전략
선진국 사례 : 사회발전에 따른 필연적 성장	지주회사	상법개정	Governance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
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조선, 신재생에너지, ESS	한미 무역협상 타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K-조선 원팀 협약을 통한 민관 공동 대응 체제 구축

- 초과 수익 창출 전략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저평가된 가치주, 산업사이클을 고려한 전략적 운용방식 지향
- 산업 내 경쟁구도 분석을 통해 업종별 종목 선정,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이익 성장성 높은

업종에 집중 투자

• 리서치와 유용조직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



1 성장주투자

- 구조적 확대가 가능한 산업 발굴
- 글로벌공급망재편과정에서새로운성장의기회발굴
- 이러한 산업 내에서 초과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

2 저평가된가치주

- 국내 주식시장 PBR1이하 또는 저평가된 기업 多
- 기업지배구조개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저평가 해소 가능성

3 역발상투자전략

- 경기 민감주의 경우, 사이클 상 최악의 시점에서 최우량 기업에 투자
- 구조적으로 쇠퇴하는 산업과 기업은 철저히 배제
- 투자 유니버스 내 종목에 대한 기업 역량, 사업모델, 밸류에이션 분석 등을 통해 투자 종목 선정 및 편입 비중 결정
-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세부 산업 분류	종목 예시
인공지능 인프라	SK하이닉스, 두산,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원자력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
방위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조선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신재생 에너지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SK오션플랜트 등
ESS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자본시장 선진화	LS, SK, 삼성생명 등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 및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전략]

- 신용도 높은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및 은행채 등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회사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추구
- 듀레이션 전략: 금리 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조절하여 금리상승 또는 하락에 대응
- 수익률 곡선(Yield Curve) 전략: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만기구간에 투자하여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확대)를 통해 초과수익 추구
- 크레딧 전략: 내부 회의체 및 기업분석, 수요예측 예정종목 분석, 스프레드 계량 분석 등을 기반으로 저평가된 크레딧물에 투자, Top-down 관점에서 크레딧 스프레드의 방향성 전망하여 크레딧 비중을 조절
-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투자대상	운용비중(%)
------	---------

국채	40%
특수채	10%
은행채	10%
회사채	100/
(신용등급 A- 이상)	10%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 및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징상 비교지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후적 운용평가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참조지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조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를 위한 것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아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참조지수: KOSPI 30% + KIS 국고채(02~03Y) 65% + Call Rate 5%
- KOSPI: 한국거래소(KRX)에서 산출 및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보통주를 대상으로 시장 전체의 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주식시장 지수입니다.
- KIS국고채(02-03Y): KIS 채권평가에서 산출 및 발표하는 지수로, 잔존만기 2년~3년의 국고채 종목들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중기 국고채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3) 위험 관리

- ① 위험관리방안
 -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수행
 -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
 - 시장위험: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으로 투자자산 가치감소위험
 - 신용위험: 채무자(계약상대방)의 채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위험
 - 유동성 위험: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으로 환매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위험

(4) 유동성리스크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① '유동성리스크'란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집합투자재산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변동을 초래할 위험과 만기 해지청구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 ②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분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분류
 - 대규모 자금유출로 인한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 자금의 과부족 해소를 위한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
 -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펀드 내 현금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상시적인 자금유출과 자금의 과부족을 사전에 대비
- ③ 비상조치계획

위기대응 업무 프로세스 지침 등에 의거, 사전에 수립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기 관리조치를 시행합니다.

1. 위기예방	리스크 지표 별 정기 모니터링, 주기적 포트폴리오 분석 및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 시행
II. 위기인지	위기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대표이사, 부사장 및 각 주요 부서장들로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
III. 위기대응	・ 위기대응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필요시 유동성 관련 비상 대책 시행
	・ 기타 각 부서별 업무분장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기대응 조치 시행

-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두지 이 너 에 대회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군걸취임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시장위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가격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주식	
변동위험	투자전략 중 하나인 '역발상 투자 전략'에 따라 편입된 종목이 예상치 못한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라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율 변동에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따른 위험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오 이침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 위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생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또는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주기 등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거나 환매연기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소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상기의 투자위험은 작성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l l		
l l		
_	_	=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분류표>

등급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혜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주1) NH-Amundi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의 위험수준을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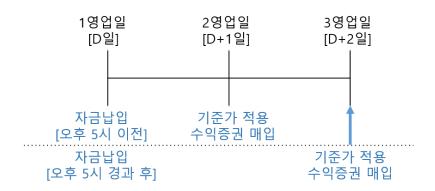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스스크셔치 오페이 (^ ^)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수수료선취-온라인 (Ae)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1 1 1 1 1 1 1 1 1 (ec)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
	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최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입시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최초 가입시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 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AARINI ORINO WOOL (C 04/07/17/5)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퇴직연금 사업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 구구프미영구-윤디전규피-개전원급(3-P1(원급시국))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3)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① 15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5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시30분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	-------	----	-----

78	중도환매	중도환매시	중도환매
구분	불가	비용발생	허용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O

※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5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 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시30분 이전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수익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집합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
	amundi.com)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 어는 자신는 그 궁규들도 다듬의 기준에 근거하여 경기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해외장내파생상품	경우 전날의 가격)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채무증권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할만한 시가가 없		
는 경우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	후취판매	전환	환매
T 世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구구표한뒤-포르니한 (A)	0.7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_	_	_
TE -E (Ac)	0.35%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납입금액의	_	_	_
TEC -X=	0.3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	-	-	-
		3년 미만		
스스크호치 오리이스피 (C)		환매 시: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	환매금액의	-	-
		0.15%이내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	-	_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전환시	환매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명칭 (클래스)	집합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22 0 22	동 영 유 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 •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37	0.600	0.02	0.01	1.000	0.76	-	1.000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37	0.300	0.02	0.01	0.700	0.60	-	0.700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0.37	0.313	0.02	0.01	0.713	-	-	0.713	-	-	
수수료미징구-	0.37	0.950	0.02	0.01	1.350	1.12	-	1.350	-	-	

주2)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오프라인(C)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27	0.475	0.02	0.01	0.075	0.72		0.075		
(Ce)	0.37	0.475	0.02	0.01	0.875	0.73	-	0.875	-	ı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0.37	0.495	0.02	0.01	0.895	-	-	0.895	-	-
무권유저비용(CG)										
수수료미징구-	0.37	0.010	0.02	0.01	0.410	_	_	0.410	_	_
오프라인-기관(Cf)	0.57	0.010	0.02	0.01	0.410	-	-	0.410	-	-
수수료미징구-	0.37	0.000	0.02	0.01	0.400	_	_	0.400	_	_
오프라인-랩(Cw)	0.57	0.000	0.02	0.01	0.400			0.4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0.37	0.680	0.02	0.01	1.080	-	-	1.080	-	-
(C-P1(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0.37	0.340	0.02	0.01	0.740	-	-	0.740	-	-
(C-P1e(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0.37	0.640	0.02	0.01	1.040	-	-	1.040	-	-
(C-P2(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0.37	0.320	0.02	0.01	0.720	-	-	0.720	-	-
(C-P2e(퇴직연금))										
수수료후취-	0.37	0.270	0.02	0.01	0.670	_	_	0.670	_	_
온라인슈퍼(S)	0.57	0.270	0.02	0.01	0.070			0.07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	0.37	0.204	0.02	0.01	0.604	-	-	0.604	-	-
(S-P1(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퇴직연금	0.37	0.194	0.02	0.01	0.594	-	-	0.594	-	-
(S-P2(퇴직연금))										
지급시기	매3개울	릴 후급, 투지	신탁의 일부	부 또는 전부	해지 시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며,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전기대미용	Repo·콜·대차 또는 대주·현금 등 중개수수료 등	-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다만,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환급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 -

- 상기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작성기준일의 전월말 기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단위 : 천원)

	1				(. [2]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르네ㅡ (8ㅠ)	구시기단	후	후	후	후	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2	277	386	618	1,283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6	181	258	423	9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8	184	262	430	9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8	282	430	744	1,6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0	183	280	487	1,0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92	187	287	498	1,1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86	132	230	5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41	84	129	225	5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11	226	345	598	1,3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76	155	237	413	9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	217	333	577	1,2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74	151	231	402	89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9	140	215	374	8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62	127	194	338	7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61	124	191	332	744

주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종류 A 와 종류 C]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 Ae 와 종류 Ce]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4) [종류 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7%], [종류 Ae, 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35%]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5) [종류S]수익증권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를 감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금의 조성 및 사용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 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상기의 ①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예정이나, 조성된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는 시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 신성장·신기술·농업테크 관련 산업체 및 대학교에 대한 지원
 - 2. 공익재단에의 기부 및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 3. 농업·농촌 공공활동 및 이에 준하는 기타 사업에의 지원
 - 4.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등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종료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수익자는 ①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③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계약서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근급시국세과 과세 구표 사용]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간 5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납입요건	1. 연 1,800 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ᄉᄙᄭ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수령요건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연금저축계좌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세액공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분리과세한도	연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1)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2) 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음

3)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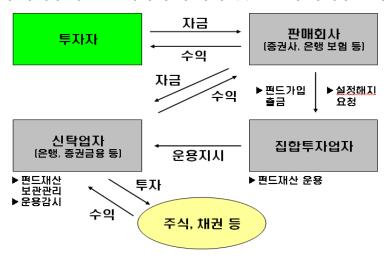
④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⑤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⑥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41.15											
회사명		NH-Amundi자산운용(주)									
주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층)									
연락처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2002.04	농협과 CAAM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체결									
	2003.01	NH농협금융지주와 Amundi의 합작법인 설립									
		※ Amundi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 2010. 01									
		CAAM에서 Amundi로 사명 변경									
	2003.03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3.04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6.09	국내 대형 연기금 SRI펀드 운용사 선정									
	2007.08	NH-CA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9.01	수탁고 10조원 돌파									
	2009.06	국내최초 공모 레버리지 펀드 출시									
회사연혁	2010.01	'Amundi자산운용'으로 재출범 (모회사인 Credit Agricole과 Societe Generale의 자본출									
	2010.01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9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2012.03	'NH농협금융지주'로 새롭게 출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7개의 금융자회사로 구성)									
	2015.08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2015.10	대체투자 사업 진출									
	2016.05	NH-CA자산운용㈜에서 NH-Amundi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17.07	모회사인 Amundi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완료 : 자산규모 1,600조원의 글로벌 Top8									
		운용사로 발돋움									
	2018.02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책임투자형' 우수운용사 선정									
	2018.03	HANARO ETF 출시									
	2018.11	사모 헤지펀드 출시									

	2018.1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9.02 KG제로인 2019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대상' 수상					
	2019.02 매일경제 2019 매경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2022.01	수탁고 50조원 돌파				
자본금		400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 업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 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24. 12말	′23. 12말	항 목	′24. 12말	′23. 12말
현금 및 예치금	75,038	73,831	영업수익	92,492	86,309
유가증권	60,411	51,474	영업비용	55,689	50,796
유형자산	1,226	1,369	9 H N 9	55,069	30,796
기타자산	26,297	23,521	영업이익	36,803	35,513
자산총계	162,972	150,195	영업외수익	712	517
예수부채		-	0 0 4 1 7	712	317
기타부채	22,842	20,600	영업외비용	292	362
부채총계	22,842	20,600	법인세	7,225	9,113
자본금	40,000	40,000			
이익잉여금	100,130	89,595	당기순이익	29,998	26,555
자본총계	140,130	129,595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9.0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부동산및 부동산파		혼합자산 및혼합자 단기금융	총 계	
12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한 생 구	发득 글시 산파생	산파생	F/108	0 71
수탁고	26,838	108,598	4,853	0	26,134	55,149	0	10,127	66,000	5,378	162,383	465,460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 02-2002-3000)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업무
- 상기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2)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연락처: (02) 399-335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엔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http://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연락처: (02) 785-1410
	- 홈페이지: http://www.egap.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2)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합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탁계약서 제42조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NH-Amundi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nh-amundi.com) 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투자신탁의 경우 제외합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말일
 -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간의 거래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7 H	LILO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투자주체 및 투자목적

- (1) 투자주체
-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 자산운용(주)

(2)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 자산운용㈜은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운용성과에 대한 공유장치를 마련하고자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고유재산을 투자합니다.

나. 투자기간

[의무투자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최초 투자 의무액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분배금 재투자액을 포함한 금액)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다만, 당초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이었으나, 수익자총회 등을 통해 존속기한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3년간 투자 유지)
 -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i) 당연 해지사유 발생, ii)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로서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iii)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 하는 경우
 -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소규모 집합투자지구 정리를 위해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자사집합투자기구 투자 의무를 승계. 다만, 변경된 집합투자업자는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의무투자기간까지 고유재산 투자금을 유지

다. 투자 및 회수계획

- (1) 투자시기 및 투자금액
-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2024년 12월 23일)된 고유재산 투자금 2억원 전액을 이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에 일시에 납입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의 회수

-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고유재산 투자금 회수 시에는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당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다만,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
 - ·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
 - · 투자금 회수 시,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

(3) 내부절차

-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납입 및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에 따라 이사회 등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실행합니다.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705-1117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금융투자상품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스이즈긔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수익증권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기준가 산정 통화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100001/1/11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7200001001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00/11/88///11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10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0110	판매수수료를 클래스별로 달리 적용하는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이자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및 추가 불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용어	내 용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조지수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